

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67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7월 3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개정의 시행 시기를 기술연구원 해산 등기일로 변경하고, 관계법률에 맞춰 감사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며, 독립적이고 공정한 통합지원 업무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통합지원단의 설치·운영을 담당하도록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안 부칙 제7조(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개정)의 시행 시기를 조례 공포일에서 서울기술연구원 해산 등기일로 수정함(안 부칙 제1조).
-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한 문구 삭제(안 부칙 제3조).
- 서울시가 통합지원단의 설치·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, 통합지원단 업무 총괄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파견 규정을 삭제함(안 부칙 제6조).

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“제5조까지의” 를 “제5조까지와 제7조의” 로 한다.

안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“따라 시장이” 를 “따라” 로 한다.

안 부칙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통합지원단 설치)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부 칙	부 칙
<u>&lt;신설&gt;</u>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3조부터 <u>제5조까지의</u>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3조부터 <u>제5조까지와 제7조의</u>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<u>&lt;신설&gt;</u>	제3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<u>따라 시장이</u>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	제3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<u>따라</u>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② ~ ⑤ (개정안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제6조(통합지원단 설치) ①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<u>한시적으로</u> 통합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	제6조(통합지원단 설치)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<u>한시적으로 시에</u> 통합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	<p>② <u>통합지원단 업무를</u> <u>총괄하기 위해 시 소속</u> <u>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조사연구”를 “조사·기술개발·연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”를 “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제1조의 목적달성”을 “도시문제 해결”로 한다.

3.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

4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
제4조제1항 중 “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”을 “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”로, “줄”을 “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연구원의 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 중 “사회적 학식”을 “학식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총괄한다”를 “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감사한다”를 “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”을 “(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반 연구·조사 업무를”을 “각종 조사·기술개발·연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“조사·연구”를 “조사·기술개발·연구”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의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

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(정원의 직원 포함)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,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,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른다.

③ 제2항에 대한 각종 근로조건은 단일화된 규정을 적용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는 직원이 보수 수준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의 직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.

제4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본다.

제5조(재산의 승계)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.

제6조(통합지원단 설치)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

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7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7호바목을 삭제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 중 “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”를 “서울연구원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·장기계획 및 자료의 <u>조사연구</u></p> <p>2. 시 행정 및 의회 <u>의정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7. 그 밖에 <u>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 <p>제4조(기금 및 출연금) ① 시는 연구원의 <u>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</p>	<p>제3조(사업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</p> <p>2. ----- <u>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</p> <p>3. <u>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</p> <p>4. <u>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</u></p> <p>5. ~ 8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</p> <p>9. ----- <u>도시문제 해결</u>----- -----</p> <p>제4조(기금 및 출연금) ① ----- <u>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-----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---.</u></p> <p>② <u>연구원의 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연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금을 둘 수 있다. 기금은 시,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
제5조(이사회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

⑤·⑥ (생략)

제6조(원장 등)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(생략)

제7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

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·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5조(이사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학식-----  
-----  
-----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원장 등) ① -----  
-----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-----.

② -----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-----  
----- 각종 조사·기술개발·연구를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p>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<u>조사·연구</u>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<u>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제11조</u>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1조(공무원의 파견)</u>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2조</u>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p> <p><u>제13조(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